

부산지방법원 2018. 12. 19 선고 2017가단333462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0. 10

판결 선고 2018. 12. 1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5,434,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8. 5.부터 2017. 9. 3.까지는 연 6%, 2017. 9. 4.부터 2017. 11. 2.까지는 연 9%, 2017. 11. 3.부터 2017. 11. 14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되는 사실

O 주식회사 C(이하 V라 한다)는 2016. 5.경 D 대표인 피고 및 1인(피고의 아들 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.

이하 '피고 외 1인'이라 한다)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 및 판매 대행 계약(이하 '이 사건 공급대행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- 공급사(피고 외 1인)는 판매사(C)에게 상품(딸기, 토마토, 고구마, 밤줍기, 단감 체험등)을 공급하고 판매사는 공급사의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대행한다.

- 판매사는 공급사에게 2016. 5. 2. 까지 1차선 매입금 1억원을 지급한다.

위선 매입금은 실이용량을 기준으로 차감되며 차감되는 금액은 판매사가 공급사에게 매월 1회 전송하는 정산내역서에 준한다.

- 공급사는 이 계약 체결시점부터 기간만료일까지 고객에게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,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하자나 품질상의 문제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, 이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- 계약기간은 2016. 5. 2.부터 2017. 5. 20.까지로 한다.

OC는 이 사건 공급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 외 1인에게 1차선 매입금 1억원, 2차선 매입금 1천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, 위선 매입금의 반환을 지급보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6. 5. 30.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(지급)보증보험계약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계약'이라 한다)이 체결되었다.

- 보험금액 1억 원, 피보험자 C, 보험기간 2016. 5. 2. ~ 2017. 5. 20.- 피고가 C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'보험사고'라고 한다)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(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%,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%,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2%)을 지급해야 한다.

○ 그 후 피고 외 1인이 C에 대하여 위 선매입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, C가 2017. 6. 27. 피고 외 1인에게 미상환된 65,434,728원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다.

이에 C가 2017. 7. 5.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, 그에 따라 원고가

2017. 8. 4. C에게 65,434,7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~4,7~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.이하 같다)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공급대행계약의 당사자는 C와 피고 외 1인 (E)라고 인정되고,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공급 대행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위선매입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된다(이와 달리, 피고가 이 사건 공급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).

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의 채무를 대위 변제한 원고에 게 위 대위 변제금 65,434,728원 및 그에 대한 지 연손해금(2017. 8. 5.부터 2017.9. 3.까지는 연 6%, 2017. 9. 4.부터 2017. 11. 2.까지는 연 9%, 2017. 11. 3.부터 2017.11. 14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 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창현